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용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255
----------	-------

발의연월일 : 2026. 3. 5.

발 의 자 : 김용만 · 전현희 · 박찬대
강준현 · 김승원 · 민병덕
박범계 · 윤후덕 · 이인영
박상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서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 유족 또는 전상군경 및 공상공경 유족 중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배우자)에게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서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전·공상공경 유족인 처(배우자)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받는 미망인으로 회원자격을 제한하고 있음.

이에 보상금 수령여부에 따라 회원 가입이 제한되고 있는 전·공상공경 유족인 처의 경우에도 보상금을 받지 않는 사람까지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자격을 확대하고,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단체 명칭에 “미망인” 용어가 들어가 있음에도 회원 자격에 대하여는 유족인 처(妻)”라는 용어를 쓰고 있어 이를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의 명칭 및 정체성에 부합하도록 “미망인”으로 바꾸

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3호).

또한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호 단서에 서는 보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선순위자”에게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회원 자격을 부여하고 있는 바, 미망인도 이에 해당되어 유족회 회원과 중복될 소지가 있으므로 미망인은 유족회 회원에서 제외하여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안 제3조제2호 단서 등).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단서 중 “선순위자”를 “선순위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를 “미망인”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회원) 다음 각 호의 단체 (이하 “국가유공자등단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회원으로 할 수 있다.	제3조(회원)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2.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 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 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 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 는 사람의 유족 중 같은 법 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사람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 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보 상금을 받는 유족이 없는 경 우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 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u>선순위자</u> 로 하되, 순위가 같 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에는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우 선한다.	2. ----- ----- ----- ----- ----- ----- -----. ----- ----- ----- ----- ----- <u>선순위자(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미성년자는 제외한다)</u> ----- -----.

3. 대한민국전물균경미망인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또는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유족 중 <u>같은 법에 따른 보상금을 받는 유족인 처(妻)</u> 4. ~ 9. (생략)	3. ----- ----- ----- ----- ----- ----- -----<u>미망인</u> 4. ~ 9. (현행과 같음)
---	---